



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계획(안)

2024. 4.

학생지원팀

I.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등록금 위주의 정부 장학금 지원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전문 대학교 재학생*

* 2024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지원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 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 3구간 이하
- 아래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가정(중증), 새터민(탈북주민)가정,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원 정액지원(생활비 무상보조)
- 2개 학기 지원(2024-1학기, 2학기)

□ 학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 4. 9.(화) ~ 4. 16.(화) 17시
- 신청 방법

1)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학생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 2) 선발 확정자에 한하여 학생지원팀에 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 동산관(본관) 1층 행정 1실 학생지원팀 장학 담당자

□ 선발기준

배정인원	신입생	재학생	일시지원
6명	3명	3명	미정

- 자격별 순 > 학자금 지원구간 > 연소자 순
-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한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자격별 우선 선발 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 2순위)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및 학생가장 본인
- 3순위)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가정(중증)
- 4순위) 조손가정 자녀

□ 선발제외

- 초과학기자(학점등록자, 학점유예자 포함), 성인학습자, 졸업학기자
- 24-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성적 기준 : 직전학기(24-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 신규장학생 선발 중 후보자 상위자 순서로 선발
- 재단 배정 인원내 따라 재학생/신입생(1:1) 비율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선발은 장학부서에서 적의하여 선발

□ 장학금 반환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

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증빙서류 확인(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 1)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포함) : 보호종료 확인서
 - 2) 조기종료아동 : 퇴소확인서
 - 3) 보호연장아동 :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다문화 가정
 - 1)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외국인등록증
 - 2)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기본증명서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붙임1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본 자기소개서는 장학생 선발 심사에 활용될 수 있으니 사실만을 정직하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워드로 작성하며, 11pt 이하 글자로 지시된 글자 수 준수바람]

학	과		성	명	
학	년		학	번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자 기 소 개 서

목표 및 의지	□ 본인이 이루고자하는 목표(학업, 진로)에 대해 서술하시오.(500자 내)
장학금 활용	□ 장학금을 본인의 진로나 목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500자 내)

붙임2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